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내소화전방수구"란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나사식 또는 차입식으로 구분한다.
2. "옥외소화전"이란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3. "접합부"란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을 결합금속구·소방호스 등과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4. "승하강식"이란 소화전 본체가 상승 및 하강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신설 2012. 2. 9.>
5. "최고사용압력"이란 소화전 내부에 허용되는 수압력범위 중 최고값을 말한다. <신설 2024.8.28.>

제2장 공통사항

제3조(최고사용압력) 소화전의 최고사용압력은 1.2 MPa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8.28.>

제4조(접합부의 규격) ① 나사식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1. 접합부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1과 같다.

2. 제품의 나사 정밀도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계이지로 측정 시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3. <삭제 2024.8.28.>

②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차입식 접합부는 차입금구·누름링 및 멈춤링으로 구분된 것이어야 하며, 구조·모양 및 치수는 별표 6과 같다. <단서삭제> < 2024.8.28..>

③ 접합부나사의 가공부 끝단에 형성되는 턱 부분의 전면은 매끈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제5조(외관)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1.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의 외부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고, 야간에도 눈에 잘 보이도록 본체에는 KS T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이상의 반사성능을 갖는 것으로서 폭 25 mm 이상의 반사시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요자의 시방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00.12.15., 2024.8.28.>

4. 접합부는 보관·운반 등의 경우에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제6조(내압력) 본체 및 시트부에 각각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제7조(본체강도) 본체에 5 MPa의 수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4.8.28.>

제8조(밸브대 강도시험) ① 옥내소화전방수구 시트부 개방 및 폐쇄상태에서 밸브대에 다음 표의 해당 토크를 개방 및 폐쇄하는 방향으로 각각 가하는 경우 파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4.8.28.>

개폐 핸들의 지름 (mm)	토크(N·m)
67 이상 76 미만	34
76 이상 83 미만	44
83 이상 89 미만	56
89 이상 102 미만	82
102 이상 111 미만	96
111 이상 127 미만	123
127 이상 153 미만	170
153 이상 178 미만	218

② 옥외소화전의 시트부 개방 및 폐쇄상태에서 캡에 각각의 방향으로 271 N·m의 토크를 밸브대에 가하는 경우 파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4.8.28.>

제9조(재료) ①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본체 및 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품의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부품명	재료	적용규격
덮개, 디스크	CAC401	KS D 6024
	C3771BE (C3771BD)	KS D 5101
밸브대	C3604BE (C3771BD)	KS D 5101
핸들	GC200	SPS-KFCA-D4301-5015
	AC4C	KS D 6008

② 옥외소화전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본체 및 플랜지의 재료는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 품)의 GCD45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4., 2024.8.28.>
2. 부품의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부품명	재료	적용규격
캡(지상용)	CAC401	KS D 6024
캡(지하용)	GCD450	SPS-KFCA-D4302-5016
연결구, 변반이	CAC401	KS D 6024
연결구 덮개	CAC401	KS D 6024
	GCD450	SPS-KFCA-D4302-5016
	AC4C (용체화 처리후 시효 경화처리)	KS D 6008

3. 물이 항상 접촉되어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고무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1. 고무재료(O링 제외)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 재료)의 B II 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장강도 및 연신율 등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무(실리콘 제외)		실리콘고무
인장강도(MPa)	15.2 이상	10.3 이상	3.4 이상
연신율(%)	10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고무	노화조건
인장강도 및 연신율 (노화후)	노화전의 60 % 이상	(100 ± 1)℃, 70시간
경도(노화후)	노화전의 +10 이하	

2. O링은 KS B 2805(O-링)의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고무재료를 2분 동안 표시된 길이의 2배 만큼 인장시킨 후 해지한 경우 변형률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제10조(염수분무시험) 비내식성 금속재료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 ± 1) wt %의 중성 염수분무에 (240 ± 2) 시간 동안 노출하는 때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 하여야 한다. <신설 2024.8.28.>

제11조(표시)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1.03.29.>

1. 종별(옥외소화전에 한함)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도
4.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
5.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
6. 호칭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8. 옥외소화전 본체의 원산지<2010. 3. 26 신설>
9. 최고사용압력 <신설 2024.8.28.>

제3장 옥내소화전방수구

제12조(구조·모양 및 치수)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

는 별표 8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용릴호스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시트구조가 볼밸브 형상의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8.28.>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 할 때 열리고 우회전 할 때 닫혀야 하며, 핸들에는 열림·닫힘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밸브를 완전히 열 때 밸브의 개폐높이는 호칭에 따라 다음표의 개폐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져야 한다.<개정 2016. 1. 11., 2024.8.28.>

호칭(mm)	25	<삭 제>	40	65
개폐높이(mm)	19.1	<삭 제>	25.4	44.5

2. <삭제> <2021. 03. 29.>
3. 밸브 본체 각부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단면적은 밸브시트 지름의 원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4. 본체와 덮개의 조립은 나사식이어야 한다.
5. 디스크와 밸브대는 회전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6. 밸브대가 덮개의 나사부에 맞물려진 길이는 별표 11의 h란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7. 디스크는 고무패킹을 부착하거나 고무재료로 감싼 형태이어야 한다. <개정 2024.8.28.>
8. <삭제>
9. 패킹은 패킹누르개너트 등으로 고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쉽게 교

환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3. 7. 25.>

10. 핸들과 패킹누르개너트와의 사이는 밸브를 닫았을 때에도 패킹실을 끼울 수 있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패킹의 구조가 핸들을 분해해야 끼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7. 25.>

11. 치수는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 치수로 하여야 한다.

1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접합부의 치수에 따라 호칭25·호칭40 및 호칭65로 구분한다. <개정 2024.8.28.>

13. 핸들은 호칭에 따라 아래 표의 핸들 직경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8.28.>

호칭	최고사용압력에 대한 핸들 직경(mm)	
	1.2 MPa	1.2 MPa 초과 2.1 MPa 이하
25	67	76
40	83	89
65	111	127

제13조(배관용나사 규격) 옥내소화전방수구의 배관용나사는 KS B 0222 (관용테이퍼나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제14조(수력작동시험) ①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수력작동시험장치에 고정시키고 옥내소화전방수구를 닫은 상태에서 입구측 압력을 0.35 MPa 이상의 압력으로 설정한 후 서서히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열거나 닫는

경우에 누수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력작동시험과정 중에 옥내소화전 방수구 개폐핸들의 개방 또는 폐지 조작에 따른 최대작동토크는 개폐핸들의 지름에 따라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개폐 핸들의 지름 (mm)	최대작동 토크(N・m)
67 미만	4.8
67 이상 76 미만	6.1
76 이상 83 미만	7.5
83 이상 89 미만	8.1
89 이상 102 미만	13.6
102 이상 111 미만	18.3
111 이상 127 미만	25.1
127 이상 153 미만	36.6
153 이상 178 미만	47.5

제15조(암모니아부식시험) 15 %이상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은 다음 표의 토크를 나사부에 가하여 10일간의 습암모니아 공기응력균열시험을 실시할 경우, 25배의 크기로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력작동시험과 내압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호칭 (mm)	토크 (N · m)
25	140
<삭 제>	<삭 제>
40	180
<삭 제>	<삭 제>
65	200
<삭 제>	<삭 제>

제4장 옥외소화전

제16조(구조 · 모양 및 치수) ① 옥외소화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지상용 및 지하용(승하강식에 한함)은 흡수관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토출구나 방수총 등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플랜지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 2. 9., 2019. 9. 24.>

종류	토출구수	호칭	구분(설치장소)
A형	1	80 이상	지상용
B형	2	100 이상	지상용
C형	3	125 이상	지상용
D형	4	150 이상	지상용
E형	1	80 이상	지하용
F형	1	100 이상	지하용
G형	2	100 이상	지하용

② 옥외소화전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12를 참고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할 때 열고 우회전할 때 닫히는 구

조이어야 한다.<개정 2019. 9. 24.>

2. 옥외소화전은 본체의 양면에 보기 쉽도록 주물 된 글씨로 "소화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삭제 2024.8.28.>

4. 지상용 소화전은 지면으로부터 길이 0.6 m 이상 매몰될 수 있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 0.5 m 이상 1 m 이하로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2016. 1. 11., 2024.8.28.>

5. 지상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 또는 수평에서 아랫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직이어야 한다. 다만, 몸체 일부가 지상으로 상승하는 방식인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으로 할 수 있다.<2010. 3. 9 개정>

6. 옥외소화전은 사용 후 시트로부터 토출구까지의 담겨있는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플러그나 콕 그 밖의 적합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연결구덮개의 고무패킹 치수는 별표 7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로 한다. <신설 2024.8.28.>

8. 옥외소화전의 개폐를 위한 캡의 높이는 32 mm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8.28.>

9. 본체와 연결구덮개를 연결하는 최줄의 지름은 3 mm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8.28.>

③ 대량판매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주문 생산하여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제2항제7호에 적합할 경우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규격이나 사양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8.28.>

제17조(플랜지의 규격) 옥외소화전의 플랜지는 KS B 1511(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의 16 K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2024.8.28.>

제18조(압력손실시험) 옥외소화전의 압력손실은 아래표의 토출구 직경과 수에 따른 유수흐름에서 최대압력손실값 이하이어야 한다.<신설 2019. 9. 24.><개정 2024.8.28.>

토출구 호칭(A)	토출구 수	유량(L/min)	최대 압력손실값(kPa)
65	1	946	6.9
	2	1 892	13.7
	3	2 839	20.7
	4	3 785	27.6
100 이상	1	3 785	34.5
	1	5 678	89.7

제19조(작동시험) 옥외소화전의 시트를 완전히 폐쇄하는데 필요한 회전수는 아래 표에서 정한 회전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8.28.>

호칭	회전수
100 이하	8회
125	10회
150 이상	12회

제20조(작동토크시험) 옥외소화전은 제18조(압력손실시험)의 시험조건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 중 파손 및 눌러붙음 등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4.8.28.>

1. 271 N·m의 토크를 밸브대에 가하여 시트부를 폐쇄한 후 개방하기 위한 최대토크는 298 N·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완전 개방될 때까지 271 N·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271 N·m의 토크를 밸브대에 가하여 최대 개방한 후 폐쇄하기 위한 최대토크는 298 N·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폐쇄되기 직전까지 271 N·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21조(도막두께시험) 옥외소화전 본체의 외부에 대한 방청도장의 도막두께는 100 μm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8.28.>

제22조(도막충격시험) 옥외소화전 본체 표면에 300 g의 강구를 0.8 m 높이에서 낙하시킨 경우 박리가 없어야 한다. <신설 2024.8.28.>

제5장 보칙

제23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8.28.>

제2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1.><개정 2017. 7. 26., 2019. 9. 24., 2021. 3. 29., 2024.8.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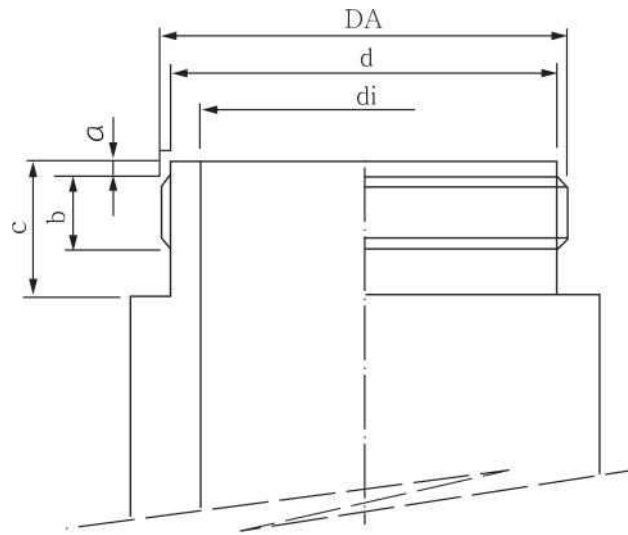
[별표 1]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개정 2019.9.24., 2024.8.28.>

접합부 나사의 기준치수 및 공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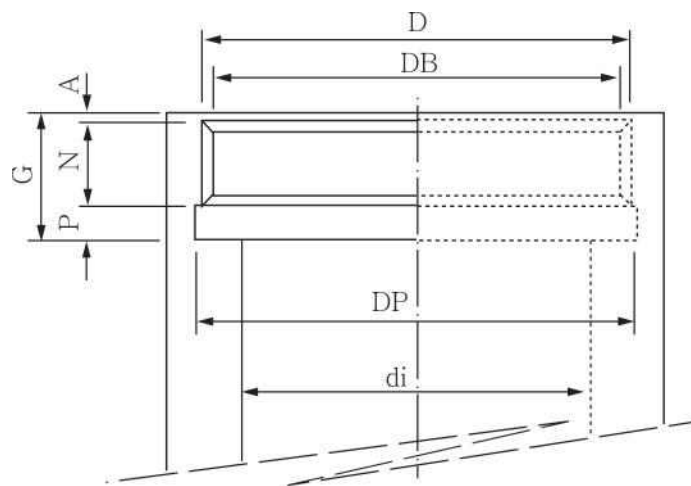
(단위 : mm)

호칭	구 분		수 나 사			암 나 사			A	N	P	a	b	c	<삭 제>	DP	G
	나 사 산 수	소방용 수통과 지 림	바 깥 지 림 D A	유 효 지 림	골지름 d	유 효 지 림	안지름 D B	골지름 D									
25	8산/ 25.4mm	25.4	35.230 -0.305 -0.869	33.167 -0.305 -0.587	31.105 -0.305 규정없음	33.167 +0.282 +0	31.105 +0.738 +0	35.230 +규정없음 +규정없음	0	8.5	5	1.5	10.5	16±0.5	<삭 제>	37	15
40	9산/ 25.4mm	38.1	50.800 -0.058 -0.585	48.971 -0.058 -0.344	47.752 -0.455 규정없음	48.971 +0.392 +0	47.752 +0.924 +0.010	50.8 +규정없음 +규정없음	1.5	8.5	5	1.5	10.5	16±0.5	<삭 제>	52	15
65	7.5산/ 25.4mm	63.5	77.788 -0.068 -0.663	75.588 -0.068 0.399	74.122 -0.545 규정없음	75.588 +0.478 +0	74.122 +0.974 +0.010	77.788 +규정없음 +규정없음	1.5	16	6.5	3	16.4	25.4±0.5	<삭 제>	80	24
75	6산/ 25.4mm	76.2	92.428 -0.381 -1.295	89.677 -0.381 -0.838	86.926 -0.381 규정없음	89.677 +0.457 +0	86.926 +1.068 +0	92.428 +규정없음 +규정없음	2	18	7	3	19.6	28.6±0.5	<삭 제>	96	27
90	6산/ 25.4mm	88.9	108.303 -0.508 -1.422	106.552 -0.508 -0.965	104.801 -0.508 규정없음	106.552 +0.457 +0	104.801 +1.068 +0	108.303 +규정없음 +규정없음	2	18	7	3	19.6	28.6±0.5	<삭 제>	112	27
100	4산/ 25.4mm	101.6	127.912 -0.635 -1.905	123.787 -0.635 -1.270	119.662 -0.635 규정없음	123.787 +0.635 +0	119.662 +1.552 +0	127.912 +규정없음 +규정없음	2	18	7	3	19.6	28.6±0.5	<삭 제>	131	27
115	4산/ 25.4mm	114.3	146.962 -0.635 -1.905	142.837 -0.635 -1.270	138.712 -0.635 규정없음	142.837 +0.635 +0	138.712 +1.552 +0	146.962 +규정없음 +규정없음	2	21	7	4	22.5	31.8±0.5	<삭 제>	150	30
125	4산/ 25.4mm	127	159.639 -0.635 -1.905	155.514 -0.635 -1.270	151.389 -0.635 규정없음	155.514 +0.635 +0	151.389 +1.552 +0	159.639 +규정없음 +규정없음	3	24	7	6	25.4	35.9±0.5	<삭 제>	162	34
150	4산/ 25.4mm	152.1	179.070 -0.635 -1.905	174.945 -0.635 -1.270	170.820 -0.635 규정없음	174.945 +0.635 +0	170.820 +1.512 +0	179.070 +규정없음 +규정없음	3	24	7	6	25.4	35.9±0.5	<삭 제>	181	34

압·수 나 사



압 나 사



[별표 2]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개정 2024.8.28.>

나 사 측 정 용 링 게 이 지
(표준치라는 것은 참고치수임)

(단위 : mm)

호칭	항목 분류	유효치름	안치름	피치허용차	산의반각 허용차	게이지 길이
25	통과 (공용)	33.167-0.304 -0.315	31.105+0 -0.018	3.175±0.008	30°±10′	12.4
	정지 (검사용만)	33.167-0.576 -0.586	31.901(표준치)	3.175±0.008	30°±10′	10.0
40	통과 (공용)	48.971-0.066 -0.076	47.752-0.074 -0.094	2.822±0.008	30°±10′	34.9
	정지 (검사용만)	48.971-0.366 -0.376	46.750(표준치)	2.822±0.008	30°±10′	31.9
65	통과 (공용)	75.588-0.075 -0.088	74.122-0.084 -0.107	3.387±0.010	30°±5′	31.8
	정지 (검사용만)	75.588-0.409 -0.422	72.450(표준치)	3.387±0.010	30°±5′	29
75	통과 (공용)	89.677-0.381 -0.393	86.926+0 +0.020	4.232±0.010	30°±5′	36.5
	정지 (검사용만)	89.677-0.825 -0.838	87.932(표준치)	4.232±0.010	30°±5′	35.4
90	통과 (공용)	105.552-0.508 -0.523	102.801+0 -0.033	4.232±0.010	30°±5′	36.5
	정지 (검사용만)	105.552-0.950 -0.965	103.687(표준치)	4.232±0.010	30°±5′	25.4
100	통과 (공용)	123.787-0.635 -0.656	119.662+0 -0.038	6.350±0.010	30°±5′	40
	정지 (검사용만)	123.787-1.255 -1.270	121.162(표준치)	6.350±0.010	30°±5′	32
115	통과 (공용)	142.837-0.636 -0.650	138.712+0 -0.038	6.350±0.010	30°±5′	40
	정지 (검사용만)	142.837-1.255 -1.270	141.126(표준치)	6.350±0.010	30°±5′	32
125	통과 (공용)	155.514-0.635 -0.650	151.389-0 -0.038	6.350±0.010	30°±5′	40
	정지 (검사용만)	155.514-1.255 -1.270	152.889(표준치)	6.350±0.010	30°±5′	32
150	통과 (공용)	174.945-0.635 -0.650	170.820-0 -0.038	6.350±0.010	30°±5′	40
	정지 (검사용만)	174.945-1.255 -1.270	172.320(표준치)	6.350±0.010	30°±5′	32

[별표 3]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개정 2024.8.28.>

나사 측정용 플럭 게이지

(단위 : mm)

호칭	항목		유효치름	바깥치름	피치허용차	산의반각 허용차	게이지 길이
	분류						
25	통과 (공용)		33.167+0.010 +0	35.230+0.018 +0	3.175±0.010	30°±5′	28.5
	정지 (검사용만)		33.167+0.282 +0.272	34.444(표준치)	3.175±0.010	30°±5′	21.0
40	통과 (공용)		48.971+0.015 +0.005	50.8+0.020 +0	2.822±0.010	30°±5′	25.4
	정지 (검사용만)		48.971+0.404 +0.394	50.051(표준치)	2.282±0.010	30°±5′	18.7
65	통과 (공용)		75.588+0.019 +0.006	77.788+0.023 +0	3.387±0.010	30°±5′	21.2
	정지 (검사용만)		75.588+0.454 +0.441	76.750(표준치)	3.387±0.010	30°±5′	15.5
75	통과 (공용)		89.677+0.013 +0	92.428+0.023 +0	4.232±0.010	30°±5′	29.6
	정지 (검사용만)		89.677+0.457 +0.445	90.128(표준치)	4.232±0.010	30°±5′	21.2
90	통과 (공용)		105.552+0.015 +0	108.303+0.033 +0	4.232±0.010	30°±5′	29.6
	정지 (검사용만)		105.552+0.457 +0.442	106.002(표준치)	4.232±0.010	30°±5′	21.2
100	통과 (공용)		123.787+0.015 +0	127.912+0.038 +0	6.350±0.010	30°±5′	32
	정지 (검사용만)		123.787+0.635 +0.620	124.415(표준치)	6.350±0.010	30°±5′	44.5
115	통과 (공용)		142.837+0.015 +0	146.962+0.038 +0	6.350±0.010	30°±5′	32
	정지 (검사용만)		142.837+0.635 +0.620	143.465(표준치)	6.350±0.010	30°±5′	44.5
125	통과 (공용)		155.514+0.015 +0	159.639+0.038 +0	6.350±0.010	30°±5′	32
	정지 (검사용만)		155.514+0.635 +0.620	156.144(표준치)	6.350±0.010	30°±5′	44.5
150	통과 (공용)		174.945+0.635 +0	179.070+0.038 +0	6.350±0.010	30°±5′	32
	정지 (검사용만)		174.945+0.635 +0.620	175.573(표준치)	6.350±0.010	30°±5′	44.5

[별표 4] <삭제 2024.8.28.>

[별표 5] <삭제 2024.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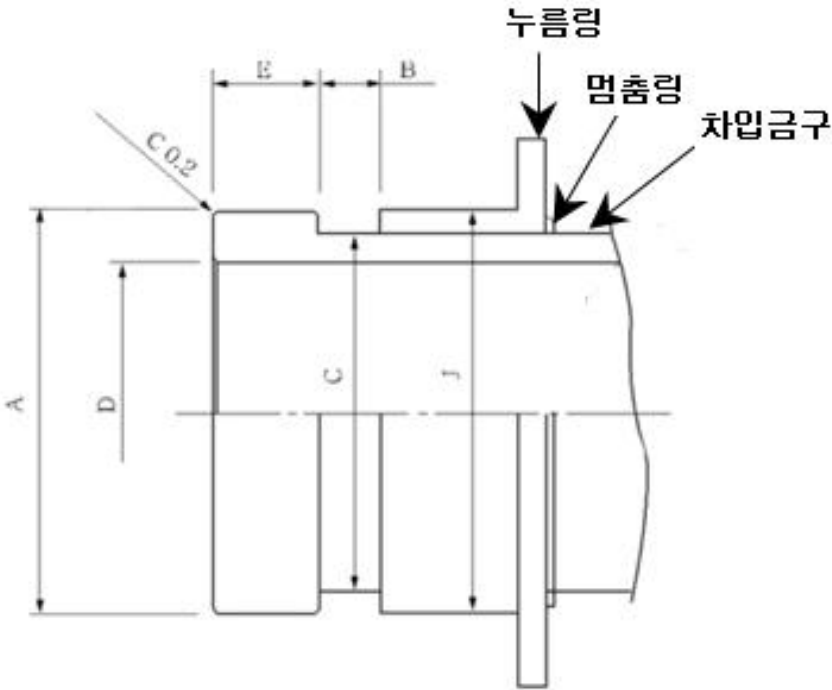
[별표 6] (제4조제2항 관련) <개정 2024.8.28.>

차 입 구

(단위 : mm)

구 분 호 칭	A	B	C	D	E	J
75	81.5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15.0 최소	76.2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69.0 $\pm$ 0.2	18.0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83.0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65	68.5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13.0 최소	63.5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57.0 $\pm$ 0.2	15.5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70.5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50	55.6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10.5 최소	51.0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44.5 $\pm$ 0.2	14.5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56.5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40	43.6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8.5 최소	39.0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33.0 $\pm$ 0.2	11.7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44.0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25	28.6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7.0 최소	26.0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21.0 $\pm$ 0.2	8.5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29.0 $\begin{smallmatrix} +0 \\ -0.2 \end{smallmatrix}$

- 주) 1. A, B, C, D, E 및 J는 아래 그림에 붙인 부분을 나타냄.
2. <삭제>



[별표 7] (제16조제2항제7호 관련) <개정 2024.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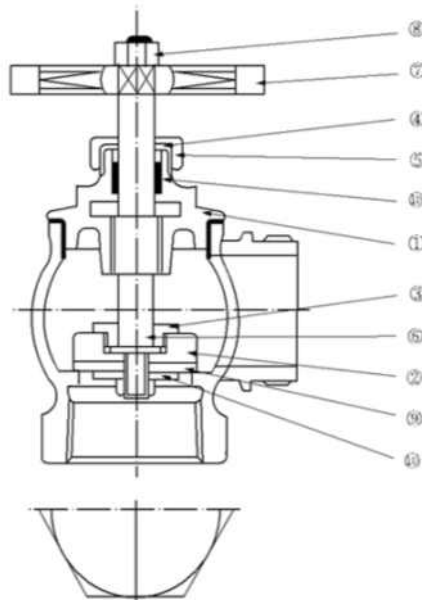
접합부용 고무 패킹 치수

(단위 : mm)

구 분 호 칭	바 깎 지 름	안 지 름	두 께
25	36	27	3.5±0.5
40	52	39	3.5±0.5
65	80	64	5 ±0.5
75	95	78	6.4±0.5
90	111	90	6.4±0.5
100	130	103	6.4±0.5
115	149	116	6.4±0.5
125	161	128	6.4±0.5
150	180	154	6.4±0.5

[별표 8] (제12조 관련) <개정 2019.9.24., 2024.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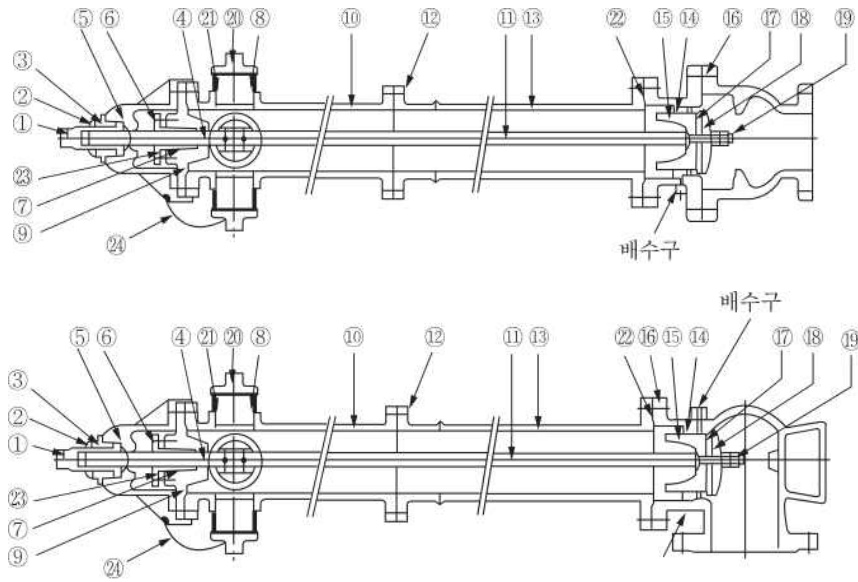
옥내소화전방수구의 부품별 재료



번 호	명 칭
1	들 개
2	디 스 크
3	디스크누르개
4	패킹누르개링
5	패 킹 누 르 개 너 트
6	밸 브 대
7	핸 들
8	핸들너트 또는 볼트
9	패 킹
10	와 셔
11	시 트

[별표 9] (제16조제2항 관련) <개정 2019.9.24., 2024.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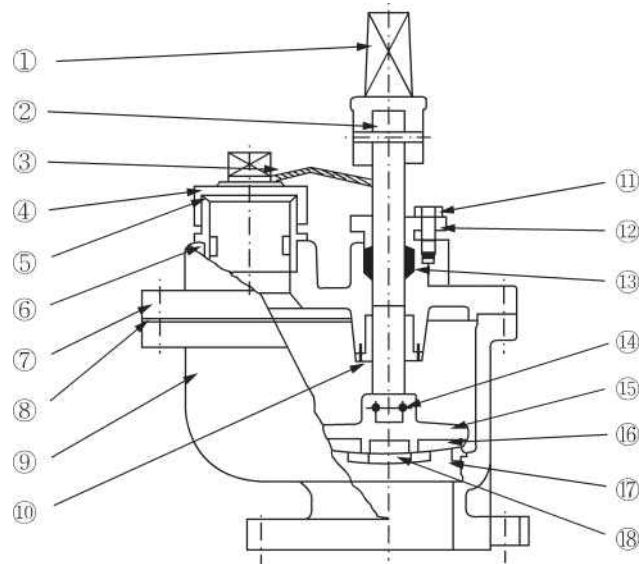
옥외소화전(지상용) 부품별 세부명칭



번 호	명 칭
1	캡
2	빗 물 덮 개
3	고 정 나 사
4	나 사 봉
5	덮 개
6	볼 트
7	패 킹
8	연 결 구
9	패 킹 실
10	윗 본 체
11	밸 브 막 대
12	볼 트 · 너 트
13	중간본체(연장통)
14	밸 브 안 내 및 변 좌
15	디스크누르개
16	아래본체(밸브통)
17	디 스 크
18	변 반 이
19	너 트
20	연결구덮개
21	패 킹
22	스파이더패킹
23	패킹누르개
24	쇠 줄

[별표 10] (제16조제2항 관련) <개정 2019.9.24., 2024.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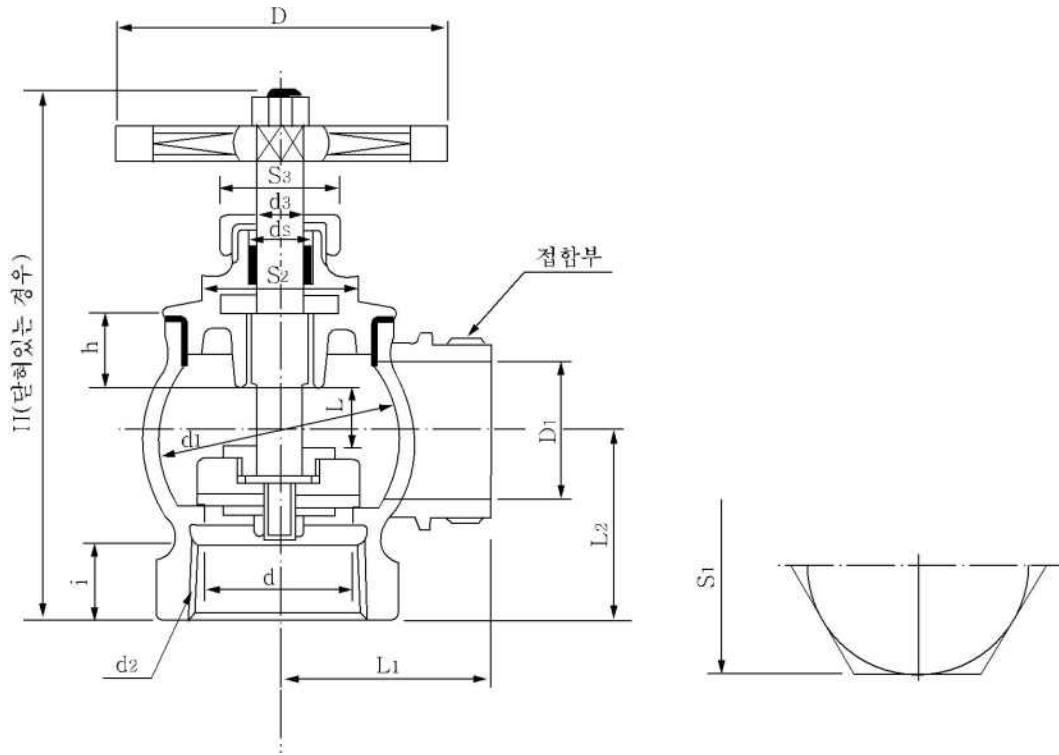
옥외소화전(지하용) 부품별 세부명칭



번호	명칭
1	캡
2	벨브대
3	쇠줄
4	연결구덮개
5	패킹
6	연결구
7	윗본체
8	패킹
9	아래본체
10	조정나사
11	볼트
12	패킹너트개
13	패킹
14	볼트
15	디스크
16	패킹
17	볼임시트링
18	디스크패킹너트개

[별표 11] (제12조제6호, 제11호 관련) <개정 2013.7.25., 2024.8.28.>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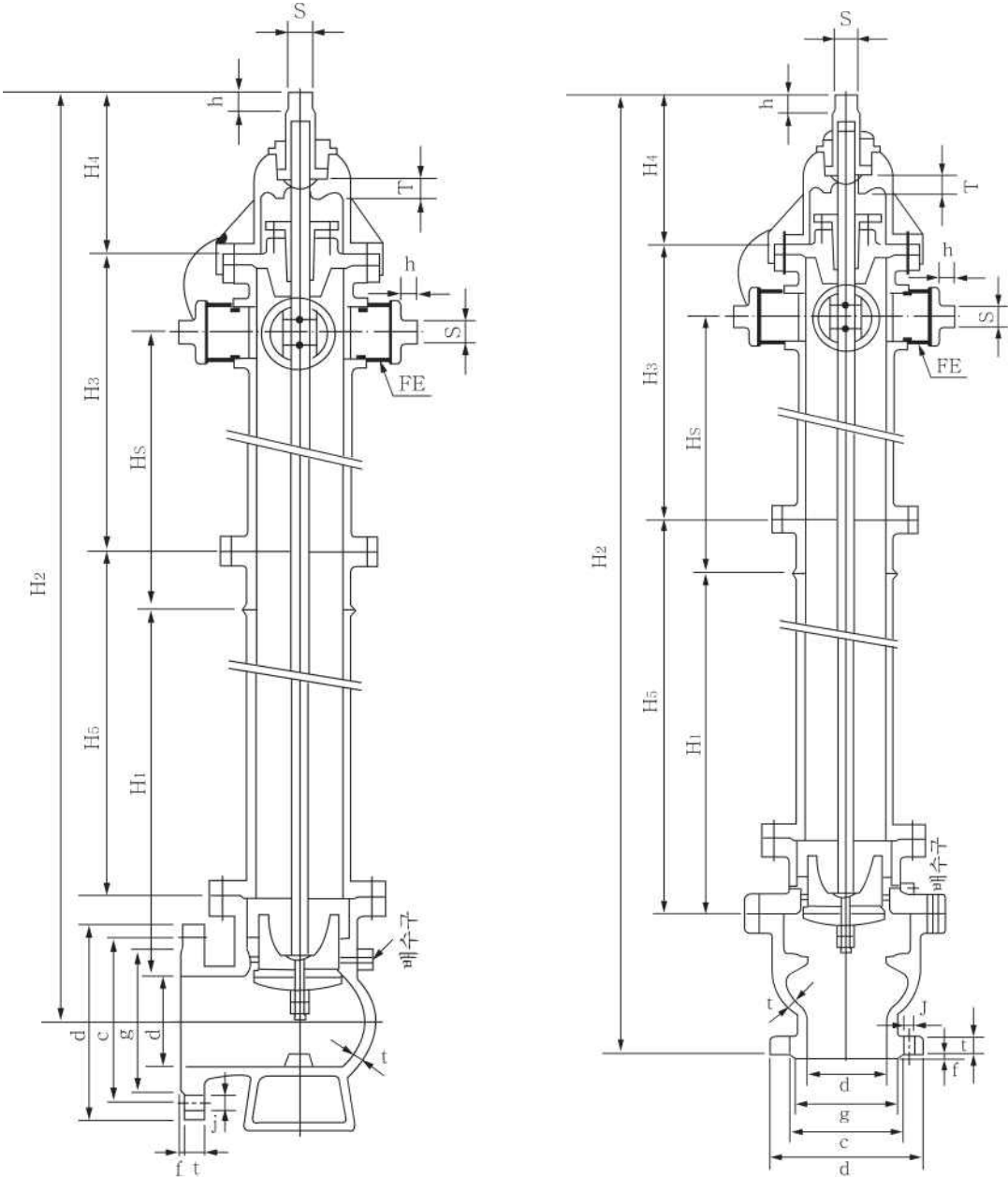
구분 호칭	면간의 거리			나사부			H	L	D
	d 최소	L ₁ 최소	L ₂ 최소	호칭	<삭제>	d ₂ 유효나사 부의 길이 (최소)	최소	<삭제>	<삭제>
25	25	42	37	PT25	<삭제>	16	100	<삭제>	<삭제>
40	40	57	53	PT40	<삭제>	19	135	<삭제>	<삭제>
65	65	85	72	PT65	<삭제>	27	180	<삭제>	<삭제>

구분 호칭	몸통			밸브대		d _s	h	맞변 또는 맞각거리		
	<삭제>	d ₁ 참고	D ₁ 최소	d ₃ 참고	호칭	참고	최소	S ₁ 참고	S ₂ 참고	S ₃ 참고
25	<삭제>	50	25.4	11	TR16	18	17	44	32	32
40	<삭제>	68	38.0	13	TR18	21	20	60	41	38
65	<삭제>	100	63.5	16	TR22	26	27	90	67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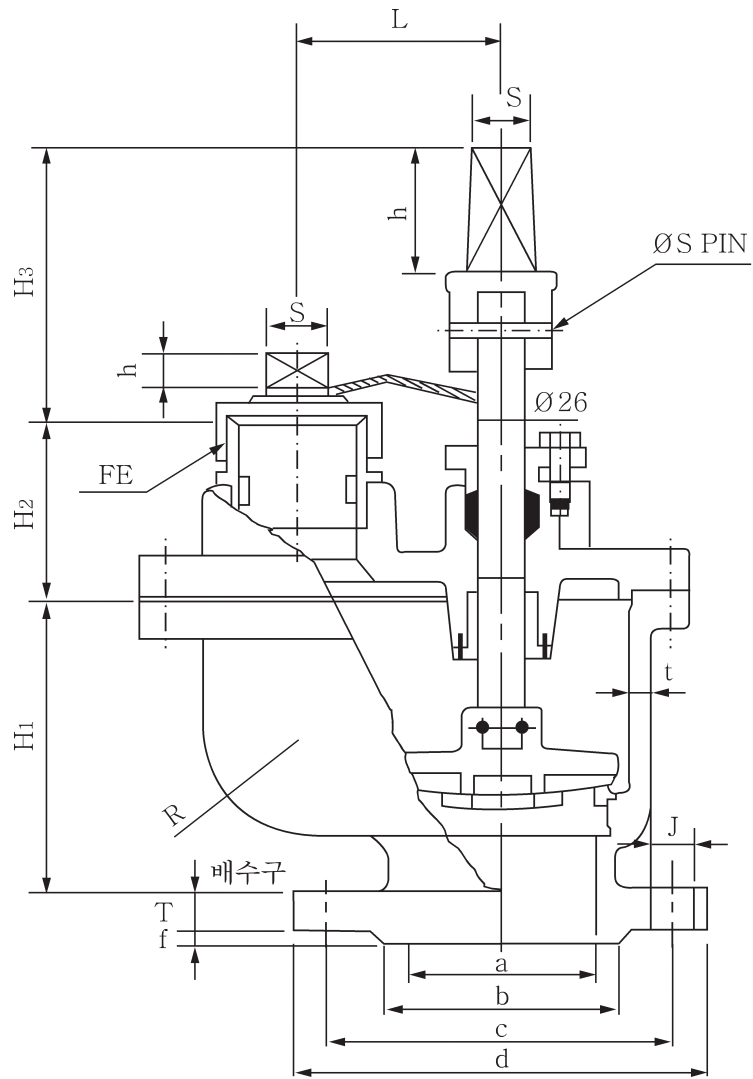
[별표 12] (제16조제2항 관련)<개정 2013.7.25., 2019.9.24., 2024.8.28.>

옥외소화전의 구조·모양 및 치수

지 상 용



지 하 용



(단위 : mm)

항목 종류	호	토출구	토출구	<삭제>	H ₁ (최소)	H ₂		H ₃ (참고)	H ₄ (참고)	H ₅ (참고)		H _s (최소)	연 결 플랜지 d	캡치수 s
	칭	수(개)	안지름			직관식 (참고)	곡관식 목관식 (참고)			직관식	곡관식 목관식			
지상용A형	80	1	63.5	<삭제>	600	1.550	1.425	480	206	700	570	500 ~ 1,000	80	32±0.5
지상용B형	100	2	63.5	<삭제>	600	1.550	1.425	480	206	700	570		100	32±0.5
지상용C형	125	3	63.5	<삭제>	600	1.550	1.437.5	480	206	700	570		125	32±0.5
지상용D형	150	4	63.5	<삭제>	600	1.550	1.450	480	206	700	570		150	32±0.5
지하용E형	80	1	63.5	<삭제>	180	97		200 (단힌경우)	-			-	80	32±0.5
지하용F형	100	1	63.5	<삭제>	100	97		200 (단힌경우)	-			-	100	32±0.5
지하용G형	100	2	63.5	<삭제>	180	97		200 (단힌경우)	-			-	100	32±0.5